

6. 賃貸住宅 不均一 課稅條例(準則)

內 務 部

시 · 군 조 례	구 조 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시·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·군세불균일과세조례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제정 82. 5. 22(세제 1268- 6905) 개정 82. 6. 28(세제 1268- 8369) 개정 83. 12. 29(세제 1268-16137) 개정 84. 12. 3(세제 1268-14904) 개정 85. 11. 30(세제22670-14409) 개정 86. 12. 10(세제22670-14874) 개정 87. 12. 18(세제22670-15308) 개정 88. 12. 22(세제22670-13844) 개정 89. 11. 30(세제22670-10499) 개정 90. 12. 7(세제22670-11344)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제정 88. 4. 28(세제22670- 4546) 개정 88. 12. 22(세제22670-13844) 개정 89. 11. 30(세제22670-10499) 개정 90. 12. 7(세제22670-11344)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

시 · 군 조 례	구 조 례
<p>1. “건축주”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)을 교부받은 자(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). 공공단체·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임대주택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(전용면적을 말한다)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·연립주택·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.</p> <p>3. “임대주택용 부동산”이라 함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.</p>	<p>1. “건축주”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)을 교부받은 자(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). 공공단체·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임대주택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(전용면적을 말한다)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·연립주택·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.</p> <p>3. “임대주택용 부동산”이라 함은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.</p>
<p>제 3 조(불균일과세)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</p>	<p>제 3 조(불균일과세)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</p>

시 · 군 조 례	구 조 례
<p>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,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.</p> <p>제 4 조(경감신청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미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(군수·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,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.</p> <p>제 4 조(경감신청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.</p> <p>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,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시 · 군 조 례	구 조 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2년 5월 26일부터 시행(적용)한다.</p> <p>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재산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③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시 · 군 조 례	구 조 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